

JYPE 이사회 운영 규정

2013년 7월 8일 제정
2024년 [10]월 [22]일 개정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이사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회사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③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4조 【이사회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③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의 결의로 정한다.

제5조 【구성】

-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 ② 이사의 구성원은 3인 이상 8인 이내로 한다.
- ③ 이사회에는 총 이사 수의 4분의 1이상의 사외이사를 둘 수 있다.

제6조 【의장】

- ① 이사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자 또는 직무를 대행할 순서를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무대행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에 의한 임시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관계인의 출석】

이사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이사는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이사회일자를 정하고 적어도 그 3일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긴급을 요하거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전항의 절차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결의방법】

- ① 이사의 결의는 법령 및 정관, 이 규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부의사항】

-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2) 영업보고서의 승인
- (3) 재무제표의 승인
- (4) 정관의 변경
- (5) 자본의 감소
-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9)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12) 주식배당 결정
-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14) 이사·감사의 보수
- (15) 회사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 (6) 공동대표의 결정
-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 (13)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 (14)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 (15)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및 이전 또는 폐지
- (1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주요사항

- (1) 투자에 관한 사항
- (2) 중요한 계약의 체결(단, 직전년도 자본총계(연결기준) [5]% 이상인 건에 한함)
-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4) 결손의 처분
-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 (6) 신주의 발행
- (7) 사채의 모집
- (8) 준비금의 자본전입
- (9) 전환사채의 발행
-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11) 5억원 이상의 대규모 금액의 자금도입 및 채무보증을 포함한 보증행위
- (12) 5억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 (13)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및 소각

4. 이사에 관한 사항

-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 (2) 이사가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겸임에 관한 사항
- (3) 이사의 변동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사항
- 3. 중요한 소송의 제기사항
-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사항
- 5.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 6.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7.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 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
- 9.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3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4조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

-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혹은 어느 이사로부터 이러한 취지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7조 【부속실 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부속실을 운영하거나 전담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 【간사】

이사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 년 07 월 0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 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